

### 13.12.070: 논쟁된 청구서 :

A. 고객이 자신의 수도 요금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경우, 계량기를 다시 읽고 계량기에 누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량기에서 누출이 발견되지 않으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량기를 제거하고 이 제목의 섹션 13.13.16.030에 자세히 기술된대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제한 사항들 내에서 계량기가 시험을 하고 고객이 수도 청구서에 계속 질문을 하는 경우, 계량기가 제공하는 언급된 건물에 대한 개인 조사는 수도 관리자 또는 그의 임명된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 언급된 청구서를 조정할 이유가 없는 경우, 고객은 (시의회 결의에 의해 설정된 신청 수수료 지불을 포함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항소할 수 없는 판결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과도한 사용량의 논쟁 이외의 이유로 수도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고객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항소할 수 없는 판결을 위해 위원회에 (시의회의 결의에 의해 설정된 신청 수수료 지불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